



물질안전보건자료 (Material Safety Data Sheet)

제품명 DADMAC (Diallyldimethylammonium chloride solution)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가. 제품명 DADMAC (Diallyldimethylammonium chloride solution)
나.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산업 부문 : 수처리 유형 : 수처리 원료
다. 공급자 정보(수입품의 경우 긴급 연락 가능한 국내 공급자 정보 기재)
회사명 (주) 영광글로벌
주소 서울 노원구 노원로15길 10, C동208호(하계동, 하계테크노타운)
긴급전화번호 02-6223-0862

2. 유해성·위험성

GHS (제 6 개정판)에 따른 제품의 유해성 등급 및 표지 요소 :> GHS 유해성 등급

가. 유해성·위험성 분류 본제품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되지 않으므로 동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대상화학물질에 해당되지 않으며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경고표지 부착 대상이 아님.
나. GHS 라벨 요소 본제품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되지 않으므로 동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대상화학물질에 해당되지 않으며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경고표지 부착 대상이 아님.
다. 유해·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위험성 (NFPA) 없음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물질명 Dimethyldiallylammoniumchloride
분자식 C8H16ClN
분자량 161.67 g/몰
함유량(%) 65%
CAS 번호 7398-69-8
EC 번호 230-993-8

4. 응급조치요령

가. 눈에 들어갔을 때 -예방 차원에서 두 눈을 흐르는 물로 씻을 것.
나. 피부에 접촉했을 때 -비누와 물로 충분히 씻어내십시오. 의사의 검진을 받을 것.
다. 흡입했을 때 -들이마신 경우, 사람을 공기가 신선한 곳으로 옮기십시오. 호흡을 하지 않는 경우 인공호흡을 실시할 것. 의사의 검진을 받을 것.
라. 먹었을 때 - 의식이 없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어떠한 것도 먹이지 말 것. 물로 입을 행구십시오. 의사의 검진을 받을 것
마.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 - 주의사항 자료없음

5.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가. 적절한(부적절한) 소화제 - 물분무, 내알코올성 포말, 건조 화학물질 또는 이산화탄소를 사용할 것.
나.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 유해성 자료없음
다. 화재진압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 화재 진압 시 필요할 경우 자급식 호흡장비를 착용할 것.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가.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및 보호구 -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할 것. 증기, 미스트 또는 가스를 흡입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 조치사항 제품이 배수구에 유입되지 않도록 할 것.
다. 정화 또는 제거 방법 - 불활성 흡수제로 흡수하여 수거한 후 유해 폐기물로 폐기하십시오. 적절한 밀폐 용기에 보관해서 폐기할 것.

7. 취급 및 저장방법

가. 안전취급요령
나. 안전한 저장방법 - 시원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용기를 밀폐한 다음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가.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국내규정 - 직업상 노출 기준 값에 해당하는 물질을 함유하지 않음.
나. 적절한 공학적 관리 - 관리 자료없음
다. 개인보호구

호흡기 보호	- 위험 부과에 의해 공기 정화 마스크가 적합하다고 보 여진 곳에, 다목적으로 조합된 전면 마스크(US)를 사용 하거나 엔지니어를 통제하는 대안으로서 ABNK (EN 14387) 타입의 마스크 카트리지를 사용할 것. 만약 이 방독 마스크가 보호의 유일한 수단이라면, 전면 공기정화 마스크 를 사용할 것. 방독마스크 같은 물질은 정부에서 지정한 NIOSH (US) or C EN (EU) 같은 시험되고 인증된 물질을 사용할 것.
손 보호	- 선택된 보호장갑은 규정(EU) 2016/425와 여기서 파생된 EN 374 표준의 규격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 이 제품 사용 시에 피부에 접촉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적당한 장갑제거 기술(장갑 외부 표면을 만지지 않는)을 사용. 사용된 후에 오염된 장갑들은 적용 법률 및 GLP(Good laboratory practice)에 따라 폐기 손 세척 및 건조해야 합니다.
신체 보호	- 불침투성 의복, 보호용구 종류는 특정 작업장에서의 위험물질의 농도와 양에 따라 선택해야 합니다
위생상 주의사항	- 우수 산업위생 및 안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취급할 것, 휴식시간 전과 작업이 끝난 다음에는 손을 씻을 것.

9. 물리화학적 특성

가. 외관

형상	투명한 액체
색상	무색~연 황색
나. 냄새	약함
다. 냄새역치	자료없음
라. pH	5~7
마. 녹는점/어는점(℃)	자료없음
바.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자료없음
사. 인화점	N/A
아. 증발 속도	자료없음
자. 인화성(고체, 기체)	자료없음
차.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자료없음
카. 증기압	자료없음
타. 용해도	자료없음
파. 증기밀도	자료없음
하. 비중	자료없음
거. n-옥탄올/물분배계수	자료없음
너. 자연발화온도	자료없음
더. 분해온도(℃)	자료없음
러. 점도	자료없음
머. 분자량	자료없음

10. 안전성 및 반응성

가. 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 반응의 가능성	- 권장된 보관과 취급시 안정함
나. 피해야 할 조건	- 자료없음
다. 혼합금지물	- 질 강산화제
라.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 화재 시 생성되는 위험한 분해 산물. - 탄소산화물, 질소산화물(NOx), 염화수소 가스 기타 분해생성물 - 자료없음

11. 독성에 관한 정보

가.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호흡기) - 삼켜서 기도로 유입되면 유해할 수 있음 - 호흡기계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경구) - 자료없음 ○(눈·피부) - 눈에 심한 자극을 일으킴
-------------------------	---

나. 건강 유해성 정보

급성독성	
경구	- 자료없음
경피	- 자료없음
흡입	- 자료없음
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	- 자료없음
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	- 자료없음
호흡기과민성	- 자료없음
피부과민성	- 자료없음
발암성	

환경부 화학물질 관리법

IARC	자료없음 - IARC 조사 결과, 이 제품에 0.1% 이상 존재하는 어떤 성분도 유력하거나, 가능성 있거나, 확인된 인체 발암 물질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OSHA	자료없음
ACGIH	자료없음
NTP	자료없음
EU CLP	자료없음
생식세포변이원성	자료없음
생식독성	자료없음

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	자료없음
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자료없음
흡인유해성	자료없음
기타 유해성 영향	자료없음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가. 생태독성	
어류	자료없음
갑각류	자료없음
조류	자료없음
나. 잔류성 및 분해성	
잔류성	자료없음
분해성	자료없음
다. 생물농축성	
농축성	자료없음
생분해성	자료없음
라. 토양이동성	자료없음
마. 기타 유해 영향	자료없음

13. 폐기시 주의사항

가. 폐기방법	- 잔여물과 비재생 용액은 정식 폐기업체에 제공하십시오.
나. 오염된 포장	- 제품이 포함된 경우와 동일하게 폐기할 것.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가. 유엔번호(UN No.)
나. 적정선적명
다.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라. 용기등급
마. 해양오염물질
바.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대책
- 지역 운송 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름.
- DOT 및 기타 규정에 맞게 포장 및 운송.
화재시 비상조치
유출시 비상조치

15. 법적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작업환경측정물질
	- 해당없음
	○노출기준설정물질
	- 해당없음
	○관리대상유해물질
	- 해당없음
	○특수건강검진대상물질
	- 해당없음
	○제조등금지물질
	- 해당없음
	○허가대상물질
	- 해당없음
	○특별관리물질
	- 해당없음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유독물질
	- 해당없음
	○배출량조사대상화학물질
	- 해당없음
	○사고대비물질
	- 해당없음
	○제한물질
	- 해당없음
	○허가물질
	- 해당없음
	○금지물질
	- 해당없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유독물질 - 해당없음
	제한물질 - 해당없음
	금지물질 - 해당없음
	사고대비물질 - 해당없음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폐기시 폐기물관리법 제13조 폐기물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국내규제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해당없음
국외규제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로테르담협약물질)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스톡홀름협약물질)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몬트리올의정서물질)	해당없음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해당없음
EU 분류정보(위험문구)	해당없음
EU 분류정보(안전문구)	해당없음

16. 그 밖의 참고사항

가. 자료의 출처

- 본 MSDS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41조 및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19호(물질안전보건자료의 비치 등에 관한 기준)에 근거하여 국내 관련 규제 법규 현황 등을 고려하여 작성함.

- 본 MSDS는 KOSHA, NITE, ESIS, NLM, SIDS, IPCS, NCIS 등을 근거로 작성하였음.

나. 최초작성일 2017-05-20

다. 개정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개정횟수 3회

최종 개정일자 2019-11-05

라. 기타 - 이 정보는 근로자 건강, 환경, 안전을 보호하고자, 현재 가용할 수 있는 DB를 근거로 하여 작성하였음.